

# 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 2. 제안이유
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2012.10.22)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 개정.

## 3. 주요내용
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2012. 10. 22)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둠(안 제11조 및 제12조)
  - 보건진료원 → 보건진료소장
- 자구수정
  - 별표 1의 제목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로 수정(안 별표 1)

## 4. 참고사항
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 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이 2012.10.22.개정, 2013.12.12.시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.

## 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2012. 10. 22)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둠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별표 1의 제목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로 수정(안 별표 1)

## 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이 2012.10.22.개정,  
2013.12.12.시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 
것으로써,

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